

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864,741,406 | 25,942,242 |
| 일반회계 | 782,222,853 | 23,466,686 |
| 특별회계 | 82,518,553 | 2,475,557 |
| 공기업특별회계 | 60,652,631 | 1,819,579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4,035,765 | 1,021,073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26,616,866 | 798,506 |
| 기타특별회계 | 21,865,922 | 655,978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2,026,868 | 60,806 |
|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| 1,403,069 | 42,092 |
|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| 461,545 | 13,846 |
|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| 13,361,626 | 400,849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| 3,837,270 | 115,118 |
| 지하수특별회계 | 775,544 | 23,266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07,06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예산안 의회 의결 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승인받은 것으로 하고, 사용 후에 의회보고로 같음한다.(예산의 간주처리)